

「자체평가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22. 3. 7. 개정 판 (시행 2022. 3. 1.) → 2024. 9. 30. 개정 판 (시행 2024. 9. 1.)

바뀜 1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108/compare?from=1277&to=1573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10:02:27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자체평가실무위원회) ① 기획처 산하에 자체평가의 시행 및 운영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실무위원회를 둔다. ② 자체평가실무위원회는 <u>기획평가팀장</u>, 교수지원팀장, 학사지원팀장, 학생복지팀장, 총무인사팀장, 연구산학팀장, 예산팀장, 재무팀장, <u>교육혁신원 팀장</u>, 기획처 평가담당자 및 자체평가위원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0-09-07> ③ 위원장은 <u>기획평가팀장</u>, 간사는 <u>기획처 평가담당자</u>로 하며,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20-09-07> ④ 자체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자체평가 시행 및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 2. 자체평가 기준, 지표의 평가항목별 자료 수집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. 자체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. 그 밖의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자체평가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	제7조(자체평가실무위원회) ① 기획처 산하에 자체평가의 시행 및 운영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실무위원회를 둔다. ② 자체평가실무위원회는 <u>IR센터장</u>, <u>IR센터 평가팀장</u>, 교수지원팀장, 학사지원팀장, 학생복지팀장, 총무인사팀장, 연구산학팀장, 예산팀장, 재무팀장, <u>교수학습개발센터장</u>, 기획처 평가담당자 및 자체평가위원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0-09-07> ③ 위원장은 <u>IR센터장</u>, 간사는 <u>IR센터 평가팀장</u>으로 하며,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20-09-07> ④ 자체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자체평가 시행 및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 2. 자체평가 기준, 지표의 평가항목별 자료 수집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. 자체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. 그 밖의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자체평가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구조문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자체평가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"기획평가팀장"을 "IR센터장, IR센터 평가팀장"으로 하고, "교육혁신원 팀장"을 "교수학습개발센터장"으로 한다.

제7조제3항 중 "기획평가팀장"을 "IR센터장"으로 하고, "기획처 평가담당자"를 "IR센터 평가팀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